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鮑作의 사회적 지위

*김 나 영

1. 머리말
2. 포작의 시기별 추이
3. 호적자료에 나타난 포작
4. 포작 직역자의 가계변동 양상
5. 맺음말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국문요약]

본고는 조선시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로 일컬어지며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鮑作人’의 존재양태 및 사회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제주도 사회·경제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地瘠民貧 惟以水道 經記謀生”라 하여 바다에서의 해양활동은 제주도 사람들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채취한 해산물을 육지 물품과의 교환·매매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여 왔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삶에 있어서 바다는 한시도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계를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생 한 가운데 거친 파도와 함께 그 이름이 사라져간 포작인이 있었으며, 이들 포작인의 실상을 戶籍資料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제주도 대정현 지역에 남아 있는 호적자료가 포작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변동 양상의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과거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그들을 새롭게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18세기 후반 제주도 대정현 호적자료 통해 분석한 결과, 六苦役に 해당하는 良役인 포작역은 公奴婢로 인해 총당되고 있었으며 이들 공노비는 禮賓寺, 典醫監, 仁順府, 內資寺, 內贖寺, 內需司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寺奴婢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포작인들은 보편적으로 동일한 마을 내에서의 신분내혼 양상과 賤賤相婚의 혼인양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후 포작인은 格軍 등으로의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등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었으며, 사후에 그 자손들에 의해서도 포작인을 비롯한 四祖의 직역을 冒錄·冒稱·직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가 있었다.

1. 머리말

21세기를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최근 해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양이라는 공간을 복원시키고, 바다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려는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은 제주민들의 삶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제주민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무대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혹은 상선을 이끌고 주변국들과 교역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등의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한 제주민 가운데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연근해에서 활발히 해양활동을 전개한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魚鮑를 진상하는 어부들’이라 일컫는 ‘鮑作’에 주목하여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鮑作人의 존재양태 및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해양활동을 전개해 온 鮑作은 그들과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潛女보다 문헌 기록상에 먼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작의 의미는 현재, 지난 역사 속에 묻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호하지만 하며 조선시대 해양활동의 주인공으로 인식되고 있는 潛女 및 漂流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포작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포작에 대한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포작을 제외한 대상으로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초래된 결과라 여겨진다.

본고는 포작인의 사회적 정체성 및 실상을 살펴보는데 『조선왕조실록』 등의 국가 관찬문서를 비롯한 시기별 문헌집 및 지방관찬·사찬문서 등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제주도 대정현 지역에 남아 있는 戶籍資料가 포작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변동 양상의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포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자료에 기재된 포작에 주목하여 고찰함으로써 과거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그들을 새롭게 재조명함은 물론 당시 제주도 사회·경제상의 단면을 살피고자 한다.

2. 포작의 시기별 추이

1) 포작의 의미

‘鮑作’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기사인 “鮑作人等自濟州而來”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¹⁾ 이후 포작과 관련한 명칭 등은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고문헌 곳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포작’에 관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동일한 포작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용표기로 기록되어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 포작을 해석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에 포작의 명칭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우선,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나타난 포작의 명칭과 그 용례에 대해 검토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61건의 기사에 포작과 관련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鮑作의 직역을 담당한 이들의 명칭을 鮑作人·鮑作干·鮑作漢·鮑作干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포작인, 포작간이라는 명칭이 40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포작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용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와 관련한 고문헌들에 나타난 포작인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1)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본고에서 인용한 『朝鮮王朝實錄』은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사이트(<http://www.sillok.history.go.kr>)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표 1〉 제주도 관련 고문헌에 나타난 포작인의 명칭

문헌	金尙憲의 『南槎錄』	李元鎮의 『耽羅志』	李益泰의 『知瀛錄』	李源祚의 『耽羅誌草本』	金聲久의 『南遷錄』	李增의 『南槎日錄』	李衡詳의 『南宦博物』
명칭	浦作輩·浦作人·浦作	鮑作	鮑作	鮑作	浦作·鮑漢	浦作·浦作輩	鮑作·鮑漢

〈표 1〉를 보면 金尙憲 『南槎錄』에는 浦作輩·浦作人·浦作 등으로 나타나며, 李元鎮의 『耽羅志』와 李益泰의 『知瀛錄』, 李源祚의 『耽羅誌草本』 등에는 鮑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金聲久의 『南遷錄』에는 浦作·鮑漢으로 불리고 있고, 李增의 『南槎日錄』에는 浦作 또는 浦作輩라 적고 있으며, 李衡詳의 『南宦博物』에는 鮑作·鮑漢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제주도 관련 고문헌에 나타난 鮑作 직역을 담당한 이들의 명칭을 살펴 본 결과, 浦作輩·浦作人·浦作·鮑作·鮑漢 등 다양한 한자차용표기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상에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 이들의 명칭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鮑作 역을 담당하는 사람[人]’의 뜻을 지니는 ‘鮑作人’으로 통일하여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²⁾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鮑作人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직역을 담당하였고, 통념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潛女와 豆毛岳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鮑作人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14년(1483) 12월 6일 기록에 처음 등장한 이후 그들에 대한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는 성종 16년(1485) 4월 12일 계해조 이후로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아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에서 고기와 海産物 등의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여러 고을의 海産의 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후일 포작의 구체적인 용어 검토 및 고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바다를 공동의 생활무대로 하여 어류·해조류 등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魚鱖 진상의 역을 담당하였던 포작인과 潛女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작인과 潛女와의 관계 고찰은 포작인의 기록이 潛女보다 먼저 문헌상에 등장하였다는 점과 후에 포작인의 개념이 모호성을 띠고 潛女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추론할 가치의 여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金尙憲의 『南槎錄』(1601년)의 9월 22일 병자조와 李健의 『濟州風土記』(1629년)를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A-① 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었다.³⁾

A-② 海産에는 단지 生鰻·烏賊魚·分藿·玉頭魚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⁴⁾

위의 사료에 의하면, 남성인 鮑作人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잡아 이를 진상 조달하는 역을 담당하였음을 사료 A-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A-②에서 여성인 潛女는 미역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鮑作人과 潛女와의 성별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

아울러 고문헌상에 포작인의 妻로 여러 차례 潛女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이 부부로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음을 파악해 볼

3) 金尙憲, 『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4) 李健, 『濟州風土記』.

수 있다.⁵⁾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鮑作人과 潛女에 대한 용어상의 구분은 명확히 정의 내려질 수 없으나, 시기의 변천에 따른 조선시대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전기에 포작인은 전복 및 바다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는 漁夫로서 상징되어 오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들에게 과다한 전복 진상역과 과중한 균역이 부과됨으로 인해 점차 그 지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포작인들이 행하던 전복 채취 및 해산물 진상역은 그들과 함께 공동선상에서 활동해 온 潛女들의 몫으로 轉嫁됨에 따라 鮑作人과 潛女의 용어 및 관계적 의미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도 추측된다.

이어 포작인과 출륙 제주도민이라 명명되는 豆毛岳과의 상호 관련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두모악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성종실록』⁶⁾ 기사를 통해 豆禿也·豆禿也只·頭無岳이라 칭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기능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종실록』 기사에서는 한라산을 지칭하는 두모악이 제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경상도·전라도 해안에 무리를 지어 정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頭無岳’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인 豆禿也·豆禿也只·頭毛岳·頭禿은 모두 출륙 제주도민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들 頭無岳 집단을 포작인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성종실록』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기사와 『중종실록』 중종 17년 6월 신축조 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B-① “濟州는 바다로 둘러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 데, 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軍民이 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沿邊 여러 고을로

5) 李元鎮, 『耽羅志』 工匠條; 李益泰, 『知瀛錄』 增感十事; 李衡祥, 『耽羅狀啓抄』; 裴裨將傳-조선후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국문소설이다. 등장인물로 해녀와 포작이 부부로 등장하며 이들의 전복채취 모습과 함께 해산물 진상수탈의 힘겨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
6)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조;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 2월 8일 기유조.

옮겨 사는 자가 많습디다. 이미 본도의 觀察使를 시켜 推刷하여 합계한 것이 良人 91, 正兵 3, 船軍 12, 公賤 29, 私賤 17입디다. 그 중에서 사천과 身役이 없는 양인은 억지로 돌아오게 할 것 없으나, 軍役이 있는 사람과 공천은, 청컨대 모두 刷還하게 하소서.”⁷⁾

B-② “제주 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포작간들을 쇄환할 것이 없습디다.”⁸⁾

사료 B-①과 ②에서 나타난 기사의 내용처럼 출륙 제주도민인 頭無岳이 양인·선군·공천·사천 등 다양한 계층이 담당 역을 피해 전라도 해안지역으로 옮겨 살고 있음을 볼 때, 頭無岳과 鮑作人이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조선시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출륙 제주도민(두모악)의 대다수가 포작인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두모악이 곧 해물을 채취하고 진상역을 담당하는 한정된 의미의 포작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출륙 제주도민과 포작을 엄밀하게 구분지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두모악과 포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된다.

2) 포작의 출륙과 소멸

출륙 제주도민을 뜻하며 두모악으로 불리던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에 진상용 追鰓과 引鰓 및 다양한 종류의 어복 조달을 담당한 鮑作人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뒤로하고 육지로 대거 출륙해 나가야만 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들 수 있

7)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8)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신축조.

다. 제주도의 四面大海風災와 山高深谷水災 및 石多薄土旱災 등의 열악한 지형적 조건에 기인한 소위 三災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출륙 포작인이 출현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15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른 苛斂誅求하는 관리와 현지 토호세력의 착취,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그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雜役·雜稅는 해마다 증대되고 있었으며,⁹⁾ 이는 도민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결국 포작인을 포함한 제주 도민은 死活을 건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조선중기에 이르러 제주지역 포작인들은 해산물 진상 부담의 가중과 가혹한 노역 징발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출륙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으며, 그 곳에서의 존재양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출륙하여 경상도·전라도 연해안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마련한 포작인 그룹의 실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¹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를 탈출하여 兩南 沿海에 정착한 포작인들은 所住地 지방관아로부터 錄案되어 鮑作 役을 담당하면서 所居 郡縣의 정식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영국의 『豆毛岳'考』에서는 현존하는 17, 18세기의 호적대장인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가운데 1609년(광해군 원년-11戶)·1672년(현종13-187戶)·1684년(숙종 10-191戶)·1705년(숙종 31-189戶)·1708년(숙종 34-184戶)년도 5式年分 5冊에 나타나는 豆毛岳의 실체를 파악해 놓고 있다. 그 중 필자는 두모악 명칭이 호적에 처음 등장한 1609년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을 살펴 본 결과 울산의 府內面 1호수, 大垈如里 2호수, 溫陽里

9)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133쪽.

10)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9호수로 총 12호수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기록된 명칭 모두 ‘豆毛岳’이라 칭하고 있었다. 1609년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기재되어 있는 12家口 내 豆毛岳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戶主를 비롯한 그의 妻의 집안 대부분이 두모악으로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보여주는 신분내혼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호주의 평균나이는 47.8세, 妻의 평균나이는 43.7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609년 호적 대부분의 두모악호가 노비호의 호적 기재양식에 준하여 기록되어져 있었다. 12戶의 두모악호 가운데 양인 호적양식으로 기재된 것은 부내면의 호주 金三同과 대대여리의 호주 金粉孫, 그리고 온양리의 호주 萬同 등이며, 나머지 9戶는 모두 노비호적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호적에 기재된 두모악 대부분이 名과 함께 姓을 具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노비나 천인으로 쳐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1가구를 제외한 호주와 처의 본관이 울산·동래·창원·웅천 등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출신지인 제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정착지역의 지명으로 冒錄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을 획득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15세기 말엽 양남 연해 지역으로 출륙 정착한 포작인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상이로 인하여 그 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또 정부로부터도 치안상의 우려로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두모악의 상당수가 출륙 포작인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진상 해물 채납의 鮑作役을 전담하면서 본래의 남해안 주민들과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며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609년 경남 울산 호적대장 중 ‘두모악’이 등장하는 통호수에 집중적으로 流民과 海夫·海尺의 명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며, 사회적으로도 천인처럼 인식되어 그들 나름의 특수부락을 이룩하고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닌 우수한 해양사적 능력에 따라 조선정부의 格軍, 즉 水軍으로 편입된 부류¹¹⁾를 들 수 있다. 바다와 함께 同苦同樂 해온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가 곧 삶의 일부이며, 삶의 원천이었다. 이에 따라 어로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포작인들은 해양생물의 생태와 습성, 조류 및 해류, 풍향, 해저지형 및 선박건조술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세한 해양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고도의 해양사적 정보와 기술을 지니고 있는 포작인들을 水軍으로 편입시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피하여 유랑하면서 수적이나 왜구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기존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출륙 포작인들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필요성을 경각시켜 주었다.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鮑作人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갔으며, 결국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¹²⁾ 그러면, 제주도 포작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사라져 갔으며, 이들이 담당하였던 전복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의 진상은 누구에게로 전가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포작인들이 사라져간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으로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폐단에 따른 유망, 즉 출륙을 들 수 있겠다. 雜役·雜賦에 따른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고질적 병폐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포작인의 수는 대폭 감소되어 나갔다.

그 두 번째 원인으로 현종 9년(1843)에 포작인들이 수행하던 진상역을 예리처에서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私貿易으로 충당함에 따른 포작역의 혁파를 제시해 볼 수 있겠다.¹³⁾ 그 결과 포작역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또

11) 충무공 이순신 유고 전집인 『이충무공전서』의 당포대첩·한산도대첩·부산포대첩에 대한 장계의 내용에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환을 맞아 전사하거나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보자기(鮑作人)의 이름 등도 기재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포작인이 광범위하게 수군조직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46척에 달하는 포작선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李忠武公全書』 권2).

12) 현종 14년(1848) 3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동경대학소장본 『탐라지』의 공장조에서는 포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광무 6년(1902) 9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남만리의 『탐라지』 공장조에서는 포작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13)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공장조 포작, “進上撈引鰓及官用魚鰓皆令鮑作擔當 令則

다른 성격을 지닌 格軍役に 징발됨에 따라 포작이 아닌 格軍으로 변화해 나가
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참고 된다.

C① 水軍: 지금 숫자는 제주성 소속 152명과 보인이 각 2명, 摠牌 6명이 있다.
조천 소속 32명, 별방 소속 9명, 애월 소속 13명, 명월 소속 14명이 있다. 수군이 부
족하니 전선의 格軍은 포작으로써 충당하고 겸하여 치고 찌르는 훈련을 익히는 것
이 마땅하다.¹⁴⁾

C② 戰船은 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代價를 지급하지
않으면 戰場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를 撫恤할만한 價物을 넉넉히
지급할 일을 行移하여 알렸습니다. 각처의 포작한들이 格軍으로 동원된다는 命을
듣고는 온갖 계책을 다하여 이를 피하려 도모하고 있습니다.¹⁵⁾

위의 C① 과 C②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작인들은 格軍役으로 징발
되어 충당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선조실록』에서 ‘포작인 없이는
戰船을 운행할 수 없다’는 기록에서 조선정부가 배를 다루는 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포작인이 格軍으로 징발됨에 있
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모습에서 포작역과 마찬가지로 格
軍역의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포작인들이 소멸해 간 세 번째 요인으로는 조선후기로의 성리학적 질서에
입각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비록 제주도가 절해고도의
섬이긴 하나 가부장적인 이념적 사고방식과 士農工商의 유교적 윤리관이 전
해들어오지 않을 리가 만무하였으며, 이에 농사나 장사보다 鮑作役인 물질은
더욱 친한 직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남성인 포작인들은 점차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지며, 이러한 조선후기 포작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말

進上善手禮吏處給價備納官用私質”

14)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軍兵條 水軍.

15)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1월 4일 기유조.

미암아 그들이 담당하였던 鮑作의 역은 여성인 潛女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끝으로 이들 포작인들의 재생산이 불가능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제주도 는 남자의 역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三畝사람으로 육지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며,¹⁶⁾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1년이면 백여 명을 밑돌지 않은 까닭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男小女多’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작인들은 妻妾을 거느리지 못하고 홀아비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金尙憲의 『南槎錄』¹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듯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상황은 여성들조차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주도의 男小女多 사회로서 형성되어진 보편적인 처첩제도의 범주 안에 그들 포작인은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작인의 명칭과 그들 존재가 문헌상에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포작인들은 조선왕조 초기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맞물려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과 갖가지 부역, 그리고 이들이 출륙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포작인의 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위의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6) 李元鎮, 『耽羅志』, 奴婢條.

17) 林槎, 『南溟小乘』, 선조 11년 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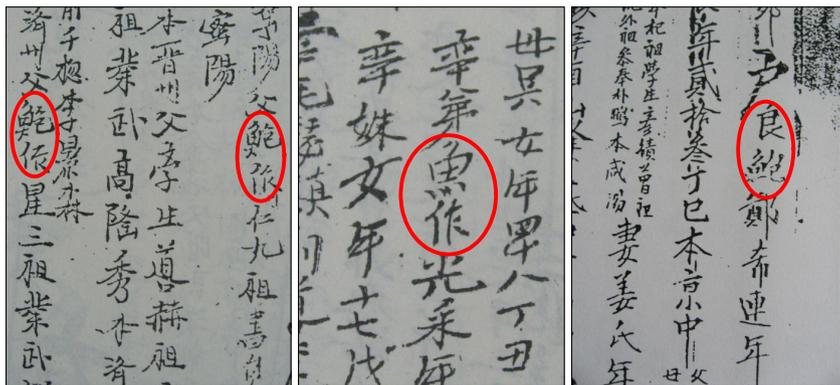
18) 제주 풍속은 많이 妻妾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 공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룰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浦作人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金尙憲, 『南槎錄』, 9월 22일 병자조).

3. 호적자료에 나타난 포작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六苦役 계층 가운데 제주도 鮑作 직역자들의 사회·신분적 지위와 그 직역변동의 양상을 호적중초를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남아 있는 529개의 호적중초 가운데 시기상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도 『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하여 대정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인 沙溪里(今勿路里)·下慕瑟里 호적중초도 함께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호적상에 보이는 포작 직역의 명칭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본문 2장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및 제주도 관련 고문헌 등에 명시되어진 포작인의 명칭과 그 용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포작 직역을 표기한 한자차용표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鮑作人, 鮑作干, 鮑作漢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호적중초에는 또 다른 포작 직역 명칭이 표기되어져 있음에 따라 포작 직역의 명칭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은 호적본문에 나타난 포작 직역의 명칭이 鮑作 외에 魚作 또는 良鮑로 명시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濟州大靜縣下慕瑟里戶籍中草』(1810)에 나타난 '鮑作'
 『濟州大靜縣下慕瑟里戶籍中草』(1801)에 나타난 '魚作'¹⁹⁾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1639)에 나타난 '良鮑' 기재 사례

일반적으로 진상 어복을 담당하는 직역명에 鮑作이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의 魚作은 그 의미상 포작과 큰 차별성은 없는 듯 보이나, 한 호적 내에 동일한 직역을 칭하면서 두 가지 명칭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魚作의 명칭은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계리 호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포작과 어작의 명칭적 차이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에서 포작 직역명으로 보이는 良鮑²⁰⁾라는 명칭이 눈에 띈다. ‘양포’는 어의 그대로 ‘양인신분의 포작’이라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또는 포작 직역과 유사한 하나의 직역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이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명칭에 대한 고증적 고찰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大靜縣 일과리·하모슬리·사계리의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의 포작 직역자들의 존재양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일과리·하모슬리·사계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포작인의 존재양상²¹⁾

리명	자료연도	통/호	戶主와의 관계	職役名	성명	나이	戶主 職役
일과리	1771년(영조 47)	5통/1호	戶主	鮑作	高石寶	34	-
	1771년(영조 47)	5통/3호	戶主	"	金夫允	26	-
	1771년(영조 47)	6통/2호	戶主	"	李完貴	43	-
	1771년(영조 47)	13통/5호	戶主	"	洪大典	44	-
	1771년(영조 47)	23통/3호	戶主	"	姜戒奉	47	-

- 19)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1807)의 7통 1호에의 池榮宗의 직역에도 ‘魚作’이라 표기되어 있다.
- 20) 戶主: 良鮑 鄭希連, 29세, 本-靈光/ 父: 良鮑 鄭敦山(故)/ 祖: 鄭目山(故)/ 曾祖: 良鮑 鄭子孫(故)/ 外祖: 良鮑 吳芝諱(故), 本-金海
 妻: 良女 戒良, 23세, 本-京中/ 父: □奴 □□(故)/ 母: 同婢 貴介
- 21) <표 9>는 『제주대정현일과리통적』,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를 참고로 표 작성.

	1774년(영조 50)	3통/2호	子	"	文成太	7	父:忠翊衛
	1774년(영조 50)	18통/2호	戶主	"	文順友	5	-
	1777년(영조 50)	5통/4호	戶主	"	金有昌	57	-
하모슬리	1801년 ²²⁾ (순조 1)	11통/1호	弟	魚作	金光采	21	兄:格軍→鎭撫
	1801년(순조 1)	7통/2호	父	鮑作	朴仁九 (故)		女:朴女→朴乂
	1801년(순조 1)	13통/4호	父	"	高星三 (故)		女:高召史→高女→高乂
	1801년(순조 1)	8통/4호	父	"	趙成 (故)		子:善手禮吏→書員
사계리	1807년(순조 7)	7통/1호	子	魚作	池榮宗	19	父:前將官

이 표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포작의 수는 총 13명으로, 3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鮑作 생존자의 평균 나이는 30.3세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일과리 호적중초에 보이는 포작 직역자 문성태(7세)와 문순우(5세)는 실제 國役 부과 대상자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작역을 지고 있음을 보았을 때, 이 당시 제주도에 국역 대상자인 丁男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는 점을 추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위 표에 보이는 하모슬리 4가계 가운데, 여작 김광채의 형 김광언은 1800~1812년까지 格軍役을 지고 있으며, 포작 조성의 아들 조원을 비롯한 그의 손자 조광해, 조광빈은 善手禮吏라는 직역을 세습하고 있다. 이러한 포작 직역자 가계구성원이 담당 한 격군과 선수예리 職役은 위의 ‘포작의 소멸원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포작이란 직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호적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한편, 이 세 지역 가운데 1800년 이전 호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포작인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 수 있는 『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를 바탕으로 鮑作 직역자들의 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계층의 분포와

22) 조선시대 호적은 원칙적으로 子·卯·午·酉의 地干이 드는 3년마다인 식년에 조사하여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 호적 표제에는 가경 6년(1801) 호적중초가 ‘嘉慶五年拾月日辛酉式戶口成籍中草’라 되어 있다. 이는 이듬해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실제 작성한 연도와 월을 기재한 경우로서, 결국 이 호적은 1800년 10월에 1801년 신유년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진 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별 직역 변동 양상에 주목해 보고자하며,²³⁾ 일과리 호적증초에 나타난 8명의 포작 가운데 2가계는 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6가계에 한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 포작 직역자의 가계변동 양상

1) 高石寶의 家系

<그림 2>는 일과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적자료인 1771년 통적을 기준으로 포작(鮑作) 역을 지고 있는 高石寶의 가계도를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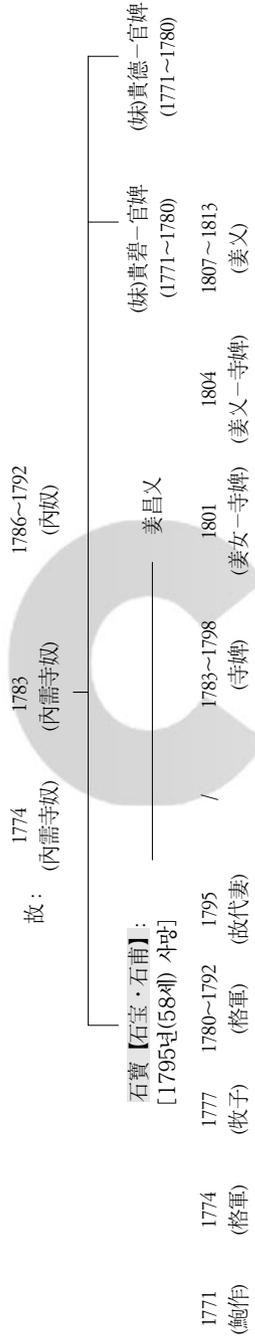
가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석보의 집안은 호적상 曾祖·祖·父 모두 公奴婢인 집안이었다. 고석보는 1771년 34세의 나이로 포작역을 지고 있었으며 1780년까지 貴璧과 貴德의 여동생 2명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이 동생들 역시 대정현 官婢의 역을 지고 있음을 호적증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후 고석보는 1783년 46세의 늦은 나이로 內瞻寺婢인 41세 姜昌乂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인 창예는 공노비로서 그녀의 曾祖·祖·父 또한 寺奴, 즉 공노비의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집안에서 보이는 신분구조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18세기 말에 이르면 공노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시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의 시노비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고석보는 1795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므로 호주를 부인이 대신하게 된다. 생존시에는 鮑作→(仁順府奴)格軍→(仁順府奴)牧子→(仁順府奴)格軍으로의 직역이 변동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 6고역의 굴레에서 벗어

23) 전형택,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6. 천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2003; 『조선후기의 사회-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경북사학』 12 참조.

高山
故 : 1783~1792
(寺叔)

—
芑日
故 : 1783~1792
(寺叔)

—
石山



비고) 이름 아래의 수치는 호적의 작성 년도이며, 이희의 <그림>에서도 동일하다.
(그림 2) 高石寶의 家系圖

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 6고역에 해당하는 포작·격군역인 良役은 공노비로 인해 충당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아래에서 설명되어질 다섯 가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에 따라 공노비의 身賤良役을 통한 신분상승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²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중한 사회·경제적 폐단에 따른 출륙 포작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가운데 하나로 조선정부는 출륙포작이 부담했던 부당한 진상역을 禮吏處가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민간에게서 사들이게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포작역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포작은 또 다른 역인 格軍의 역을 지게 됨에 따라 六苦役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가계도에 나타난 포작인 高石寶의 직역변동의 양상은 위의 내용과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당시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홀로 남은 부인 창예는 1798년에 內瞻寺奴 遮歸防軍인 남동생 姜戒宅의 호로 편입하게 된다. 1801년 호적을 보면 창예를 비롯 강계택과 부인, 그의 四祖의 직역을 모두 지운 흔적이 보이며 이후 그녀의 직역변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1801년 내·시노비가 혁파됨에도 불구하고 寺婢로서 良人化되지 못하고, 신분상승에서 제외되고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겠다.

2) 金夫允의 家系

<그림 3>는 1771년 포작 직역을 칭했던 金夫允을 중심으로 작성한 가계도이다. 김부윤의 아버지 金奉丁은 생존시(~47세) 鹽漢으로서 직역을 담당하였고, 김부윤은 그가 1828년 사망할 때(~87세)까지 (典奴)鮑作→(典醫監奴)沓漢→(典醫監奴)鹽漢→書員→老漢→(?)→書員으로의 직역의 변동을 보여

24) 김동진,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08-2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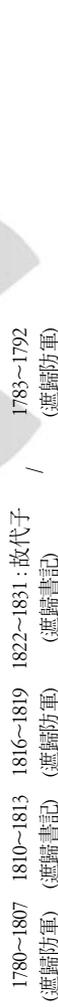
金承胤【承允】



夫允【富胤·夫尹·富允】—(妻)尙娥



尙業【上業·1810년 尙勸으로 개명】



(그림 3) 金夫允의 家系圖

왔다. 이때 김부윤이 76세가 되는 해인 1816년대의 직역명에 ‘老漢’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高齡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老職이라 여겨진다.

그는 포작역 이후 1777년부터 무려 24년 동안 鹽漢²⁵⁾으로서의 역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 봉정이 1777년 사망하자 그 직을 아들인 부윤이 계속해서 세습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²⁶⁾

그런데 여기서 포작·담한·염한으로의 6고역을 담당하여 오던 김부윤을 비롯 그의 四祖가 갑자기 서원으로의 직역이 상승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호주인 김부윤의 직역 변동 시기를 보면 1807년으로서, 대체적으로 曾祖·祖·父 모두 1804년을 기준으로 역이 서원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집안은 1801년 내·시노비가 혁파된 이후 상층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피하고 있었으나, 1816년 이후 김부윤의 직역과 1825년 이후 증조·조·부의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과 더불어 김부윤의 아들 및 그의 손자의 직역의 변천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상층으로의 진출은 불가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김부윤은 다음에 소개할 일과리 鮑作人 강계봉의 첫째 딸인 內資寺婢 尙娥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로 보아 일과리 내에서의 신분내혼 양상과 함께 천인 신분층 내에서의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처 상아의 호칭을 살펴보면, 名→女→父→召史 순으로의 기재되어 있다. 이는 순서상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제주지역 부녀자의 호칭 구조인 婢名→名→父→女·召史→氏 형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²⁷⁾

25) 鹽漢은 조선시대 염업 종사자 가운데 하나로, 그 명칭은 鹽干, 鹽丁, 鹽戶, 釜漢, 貢鹽干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료에 등장하며, 이는 육지부의 ‘소금장이’, 제주도 방언의 ‘소금바치’에 대응하는 말이다.

26) 일과리의 염전(‘소금밭’)은 그 규모에 있어 종달리·구엄리 소금밭과 더불어 손꼽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날래소금’은 오랜 옛날부터 제주 3읍에 걸쳐 그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리, 『日果一里誌-傳統과 協同의 마을』(1992)].

27) 氏는 양반 신분 부녀자의 호칭, 女와 召史의 경우 상민 또는 중인 신분 부녀자의 호칭으

1807년 그의 남편 김부윤이 서원으로 직역이 추증됨에 따라 그녀의 칭호 또한 추증된 부녀자 칭호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슬하에 2남 2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차남인 同寺奴遮歸防軍 金次業은 1795년과 그 이후의 호적에서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15세의 이른 나이로 단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姜戒奉의 家系

<그림 4>은 1771년(47세)에서부터 1783년(62세)²⁸⁾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 포작역을 담당하였던 호주 姜戒奉을 중심으로 작성한 가계도이다. 1771년 이전 기록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1771년 그의 나이 47세에 포작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포작역을 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의 曾祖 禿同 및 아버지 文金은 노직통정대부로서, 이는 조선시대 80세 이상 오래 산 노인에 대해서 良賤을 가리지 않고 내려 주었던 老人職이라 할 수 있다. 通政大夫라 함은 老職堂上이라 불리 우는 정3품의 벼슬로 이 품계를 받으면 귀천을 떠나 매년 가을에 왕이 초청·양로연을 베풀었으며, 지방에서도 왕을 대신 노인에게 향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는 1702년 『탐라순력도』의 제주·정의·대정양로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²⁹⁾

강계봉은 寺奴인 金玉斤의 딸 日晷과 결혼하여 슬하에 尙我·姪娥·仙娥의 세 딸을 두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첫째 딸 상이는 김부윤의 妻임을 앞에서

로 생각되며, 名과 宄는 상민층에서도 하층계층의 부녀자에게 사용되었다(김동진, 『18·19세기 沓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 『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71쪽).

28) 강계봉은 일과리 1774년 통적에서 그 나이가 50세로 기재되고 있지만, 다음 식년인 1777년에는 57세로 무려 4년을 올려 기록하고 있으며, 1777년 이후부터는 57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더해가고 있다.

29) 『탐라순력도』 「大靜養奴」: 대정양노는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이다. 당시 대정현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 11인, 90세 이상의 노인이 1인 거주하고 있었다(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耽羅巡歷圖』, 제주도, 1994).

姜禿同

故: 1783~1792
(老職通政大夫)

文福

故: 1783~1825 1828
(正兵) (無)

文金

故: 1774 1783~1828
(寺奴) (老職通政大夫)

戒奉【繼奉】

※ 1816년 직역에 지은훈적

1771~1783 (鮑作)

1786~1792 (寺奴)

1795 (無:故代妻)

1798~1807 (無)

1810~1816 (書員)

1819~1828 (無)

金日令-寺婢

故: 1783~1801 1804~
(寺奴) (無)

戒連

(女)上娥【上我】— 金夫允

1771~1789 (寺婢) (姜女) (姜父) (姜召史)

(女)姪娥 — [毛瑟防軍]李永好

1771~1798 (寺婢) (姜女) (姜父) (姜父)

(女)仙娥: 尙德으로 개명 — [遮歸防軍]白完賣

1774~1798 (寺婢) (姜女) (姜父) (姜召史)

〈그림 4〉姜戒奉의 家系圖

살펴보았다. 이후 강계봉은 1795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그의 부인이 호주를 이어 받게 되는데, 3년 후인 1798년의 호적에서는 부인 일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 또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생존시 강계봉은 內資寺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였으나, 사망한 이후 1795~1807년까지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1810~1816년에는 書員로서의 직역이 변동되고 있음을 일과리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세 딸의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전반 신분제 해체의 과정에서 내·시노비가 혁파됨에 따라 후대에 후손들이 그의 직역을 書員으로의 良人化를 도모하였으나, 1816년 그녀의 딸들의 四祖에 기재된 父의 ‘書員’ 직역을 모두 지운 흔적과 함께 이후의 호적에서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을 때 그의 신분상승의 도모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과리의 호적에서 그의 둘째 딸 향아는 공노비 집안인 毛瑟防軍 李永好와 결혼하였으며, 셋째 딸 상덕 또한 공노비 집안으로 遮歸防軍→遮歸鎮書記의 직역을 담당하는 白完寶와 결혼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강계봉의 세 딸 모두 일과리의 한정된 범주 안에서의 혼인양상을 보여주는 신분내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공노비 집안 간의 相婚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집안이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金有昌의 家系

<그림 5>은 1777년, 1780년에 포작역을 지고 있던 金有昌을 중심으로 그려낸 가계도이다. 이 가계도에서는 김유창이 1783년 中人 신분층인 姜顯周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이후 그가 나이가 들어 사위를 戶主로 대신함에 따라 변화되는 그의 직역변동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창의 職役은 그의 딸 金戒月이 前將官 姜顯周와 혼인을 하는 1783년을 전후로 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위 강현주를 맞아들이기 전에 장인

金戒云【繼雲・繼云・繼運】

故: 1783~1804
(納粟通政大夫)

厚永

故: 1774 1783~1795 1798~1804
(寺奴) (寺奴) (納粟通政)

有昌

1771 1774 1777 1780
(禮奴) (格軍) (鮑作) (鮑作)

1783: 老代婿~1792
(書員)

1795: 사망
(書員)

1798~1834 1837~
(納粟通政) (老職通政大夫)

(女)萬德

(女)戒月

1771~1780
(良女)

1783~
(金召史)

1783~1804
(前將官)

1807: 老代子
(武科初試)

1810~1825 1831~1837 1840~
(將官) (將官武科初試) (武科初試)

(婿)姜顯周【現周】: 1783년부터 戶主

宗海【重海】

1789~1816 1819~1831 1834~/
(鎮撫) (鎮撫隨卒) (鎮撫)

潤海【允海】

1804~1819 1822~1834 1837: 사망
(業武) (將官)

(女)

(그림 5) 金有昌의 家系圖

김유창의 직역은 禮奴 → (禮賓寺奴)格軍 → (禮賓寺奴)鮑作으로의 천인계층으로의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결혼 후 書員 → 納粟通政으로의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상 김유창의 할아버지 金戒云은 1783~1804년까지 ‘納贖通政大夫’의 직역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를 비롯한 아버지 金厚永 또한 1798년 이후 ‘납속통정’의 納贖職³⁰⁾을 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납속직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획득되었으며, 아울러 당대에 있어서 면역이 특권이 인정³¹⁾되었음을 주지하였을 때, 이는 사위 姜顯周³²⁾ 中人 계층과의 가계와 혼인을 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가경 3년(1798) 5통 1호 사위 강현주의 호적중초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증조·외조·조의 기존 직역인 ‘正兵’의 기록 위에 새로운 직역인 ‘業武’와 ‘記官’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동시에 김유창의 딸 金召史의 외조와 조의 ‘寺奴’라는 기존 직역을 ‘書員·납속통정’으로, 그녀의 아버지 김유창의 ‘書員’ 직역을 ‘납속통정’으로 대체하여 기록해 놓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신분제 해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강현주의 중인계층으로의 기반확립 및 상위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던 冒錄의 결과로 보인다.

5) 李完貴의 家系

<그림 6>은 공노비 가운데서 예빈시에 소속되어 있던 포작인 李完貴의 직

30) 納粟品職者에 대한 신분은 諸家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납속품직자를 兩班, 準兩班, 中人, 常民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납속의 경우 자신 當代의 免役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그리고 상민과는 그 처우에 있어서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이준구, 『朝鮮後期 身分構造 理解의 諸問題 檢討』, 『大丘史學』 34, 1988).

31) 정수환, 『19세기 假率의 성격과 濟州社會』, 『제주도연구』 23, (사)제주학회, 2003, 227쪽.

32) 姜顯周 父의 직역: 기관 → 업무노직절충장군첨지충추부사 → 업무노직자헌대부

역변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계도로써, 이완귀의 증조를 제외한 조·부 모두의 직역이 寺奴를 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집안도 역시 奴婢戶를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생존시 이완귀는 1771년 43세의 나이로 鮑作 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후 (禮賓寺奴)格軍 → (禮賓寺奴)鮑作 → 禮賓寺奴로서의 직역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완귀는 빈객연향과 종묘친향 때의 享官 諸執事에 대한 一餉·耆老所 春秋宴 供饋를 담당하는 관청인 예빈시에 소속된 노비로서의 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완귀는 일과리 1771년의 통적에서 그 나이가 43세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다음 식년인 1774년에는 무려 13년이 많은 56세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1774년 이후부터는 56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로 보아 1771년의 그의 정확한 나이는 53세로서 기록상의 43세는 잘못 기재된 나이로 사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완귀가 의도적으로 그 나이를 올려 적음으로써 시기상 빨리 그 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는 일과리의 포작 직역자 중 유일하게 쫓을 두고 있음이 1774년 이후의 호적에서 확인되어 진다. 요컨대 1774년 호적에서 호주 이완귀(56세)가 처 상령(相令: 40세)과 花妾 차숙(次淑: 39세)을 나란히 기재하고 있는 양상은 그 당시 처첩제도의 범주 안에 제외대상이었던 포작 직역자의 사회적 상황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4세인 그는 1792년 아들인 貴必에게 호주를 넘겨줌과 동시에 다음 식년인 1795년의 호적에서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들 귀필 또한 사망하여 며느리인 邊德每가 그 호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후 1804년 이완귀의 손자인 貴得이 그 호를 대신하게 되며, 이때에 귀득을 비롯한 사조의 직역의 명칭에 큰 변화를 보인다. 손자 귀득은 業武 → 前將官 → 將官이라는 직역의 변화양상을 보이는 등의 중인계층으로의 직역을 담당함에 따라 그의 증조는 寺奴에서 正兵으로, 祖인 이완귀와 아버지의 귀필은 書員으로의 신분을 상승시킨 흔적이 엿보이며, 그의 어머니 덕매 또한 邊女에서

李長命

故: 1783~1789
(正兵)

太福

故: 1783~1792
(寺奴)

是重 【時重 · 是中】

1774~1792 1804~1828
(寺奴) (正兵)

完貴 【完九】

1771 1774 1780 1783 1786 1789 1792 1804~1828
(鮑作) (格軍) (鮑作) (寺奴) (寺奴) (寺奴) (代子: 寺奴) (書員)

貴必 【貴弼】

1792 1795 1804~1828 1792~1798 1801 1804~1828 1771 1774~1780
(仁順府奴使命) (故代妻) (書員) (典醫監婢) (邊女) (代子: 邊召史) (內婢) (女) 貴上-司婢 (同寺婢)

貴得 【九得: 1804년 宗得으로 개명】

1798 1801 1804 1807 1810~1816 1819~1828
(除番小童) (除番小童) (業武) (業武) (前將官) (將官) (女) 李德

〈그림 6〉 李完貴의 家系圖

邊召史로의 명칭이 변화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공노비의 노비층을 형성하던 이완귀의 집안은 내·시노비 혁파이후인 1804년 그의 손자인 귀득에 의해서 寺奴인 공노비의 신분을 탈피하여 良役으로의 진출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추증해 볼 수 있겠다.

6) 文成太의 家系

<그림 7>에서는 공노비 집안으로서 18세기 후반 포작 직역이 점차 그 자취를 잃어감에 따라 포작의 역이 격군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文成太의 가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문성태는 內需司奴 文順寶의 아들로서, 아버지 형제들 順用과 順福 또한 내수사에 소속된 노비임을 일과리 호적증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는 1771년에 7살의 나이로 除番軍의 역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1774년과 1777년에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鮑作역을 지고 있었다. 이후 格軍으로의 직역변동을 이루어지나, 苦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인 12년 동안 격군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계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의 할아버지 文明起의 직역이 17세기 중반 이후 상민의 군역보다는 조금 대우받는 반·상의 중간존재로서의³³⁾ ‘忠翊衛’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공노비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충익위’라는 문명기의 직역은 이 집안과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직역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문성태는 1783년 아버지로부터 호주를 물려받고, 1789년에 仁順府婢인 姜 珽德과 혼인하게 되는데, 처 돌덕의 집안 또한 공노비의 집안으로서 이후 태어나는 아들 光海와 딸 文良 또한 노비로서의 신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세습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성태의 가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임자 식년(1792)

33) 김동진,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 『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80쪽.

文禿斤

故: 1783~1798 (寺奴) 1801 (寺奴) 1804~1825 (忠翊衛)

朝斤 【朝憲】

故: 1783~1798 (寺奴) 1801 (寺奴) 1804~1828 (忠翊衛)

明起 【命起】

故: 1774~ (忠翊衛)

(妹)順碧

順寶

1771 (內奴) 1774~1780 (內需司奴) 1783 (代子: 內需司奴) 1786~1792: 故 (內奴書員)

成太 【星太·成泰】—(妻)姜丕德

1792년(28세) 사망

1771 (除番軍) 1774 (鮑作) 1777 (鮑作) 1780~1792: 故 (格軍)

光海

1789 (寺奴) 1792: 故 (寺奴)

(女)文良 1792: 故 (同監婢)

順用 【順寵】

/ ~1801 (內需寺奴) 1804 (書員) 1807: 故 (業武)

(子)必周

1783 (同寺奴) 1804 (書員) 1807: 故 (將官)

(女)湄丹

1783 (同寺奴) 1804 (書員) 1807: 故 (將官)

(妹)順烈

順福

~1801 (內需寺奴) 1804~ (書員) 1810~ (業武)

(子)東三

1783~ (同寺奴) 1804~ (忠翊衛) 1810~ (將官) 1813~ / (同寺奴) 1804~ (忠翊衛) 1819 (前將官) 1825~ (城將)

(子)東益

1783~ (同寺奴) 1804~ (忠翊衛) 1819 (前將官) 1825~ (城將)

(그림 7) 文成太의 家系圖

일과리 통적³⁴⁾의 기록에서 문성태를 비롯 모, 처, 슬자, 슬녀, 이성삼촌 6식구 모두 몰살되어 이후의 일과리 호적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1807년 호적중초에 문성태의 작은 아버지 문순용의 집안 또한 순용을 포함한 그의 처, 아들, 며느리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 따라 이 시기 문성태 집안의 가족들이 대거 사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예상되는 그 주된 요인이 하나로 정조~순조 연간에 제주도에 만연하게 성행하였던 전염병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문성태의 異姓三寸, 즉 문성태의 父 문순보의 妻男 동감노(同監奴:55세) 姜致確은 1774년 통적에 처음 등장하며 말미에 去陸逃亡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후 이들 집안이 사라지는 1792년까지의 호적에 계속해서 “異姓三寸同監奴姜致確年七十三庚子辛巳年出陸逃亡”이라는 강치대의 기록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청에서는 신미년에 출륙 도망한 이성삼촌 姜致確에 대해 20여 년의 긴 시간동안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이성삼촌인 그가 저야했던 부역을 문성태의 가계에 전가시켜 부가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로 일컬어지며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鮑作人’의 존재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포작인의 사회적 지위와 제주도 사회·경제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고찰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실록』과 고문헌에 鮑作人·鮑作干·鮑作漢·鮑作干·鮑作輩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지고 있는 포작인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 고을의

34) 일과리 1792년 통적에서 13통 4호 문성태의 가족구성원 모두, 기재내용 말미에 ‘故’라 적어놓고 있다.

해산의 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으로 개념·정의 내릴 수 있었다.

둘째, 이들 포작인들은 제주도의 열악한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생계적인 고난과 더불어 조선정부의 과중한 貢賦 증대와 탐관오리 및 鄉權의 부당한 착취·수탈로 말미암아 고향인 제주를 등지고,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하여야 하였다.

셋째, 출륙한 포작인들의 실태를 살펴 본 결과 그들은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 지역에 산거하면서 포작의 역을 지고 정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몸소 체험에 의해 습득되어진 해양사적 정보로 말미암은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 수전술은 조선왕조에 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왜구 침입 시 格軍 등의 水軍으로 편입되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했거나 이를 기피하였던 또 다른 출륙 포작인들은 한반도 연해안을 유랑하면서 水賊이나 倭寇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넷째,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포작인의 수는 出陸 및 포작역 혁파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의 부담은 결국 그들과의 유사한 환경적·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던 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졌다. 또한 이들 鮑作이라는 역이 지녔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처첩을 거느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포작인의 재생산이 불가능하여 그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갔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후기에의 성리학에 따른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

다섯째, 18세기 후반 호적상에 나타난 포작의 가계를 일과리 호적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6명 모두 公奴婢 집안임이 확인되었다. 이때 六苦役에 해당하는 良役인 포작역은 공노비로 인해 충당되고 있었으며, 이들 공노비는 禮賓寺·典醫監·仁順府·內資寺·內瞻寺·內需司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寺奴婢였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위의 포작인들은 보편적으로 일과리 동일한 마을 내에서의 신분내혼 양상과 賤賤相婚의 혼인양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

었다. 이후 포작역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들 6명의 포작인 가운데 4명이 格軍으로의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801년에 취해진 내·시노비 혁파 이후 포작인 대부분이 그들의 직역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사후에 그 자손들에 의해서도 포작인을 비롯한 四祖의 직역을 冒錄·冒稱·직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호적상에 기재된 鮑作은 그 직역자의 수가 극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미흡한 호적자료로 말미암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포작의 실상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료적 근거와 자료의 보완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담아내는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포작, 호적중초, 전복, 해산물, 진상, 출륙금지령, 6고역, 공노비

■ 참고문헌

1. 사료

『經國大典』, 『高麗史』, 『南溟小乘』, 『南槎錄』, 『南槎日錄』, 『南遷錄』, 『南宦博物』, 『備邊司謄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辛亥大靜縣釐正節目』,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風土記』, 『濟州風土錄』, 『濟州邑誌』, 『朝鮮王朝實錄』, 『知瀛錄』, 『耽羅錄』, 『耽羅事例』, 『耽羅巡歷圖』, 『耽羅志』(이원진), 『耽羅誌』(남만리), 『耽羅誌草本』, 『耽羅防營摠覽』, 『耽營關報錄』, 『耽營事例』,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1609년),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1639년),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濟州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 『濟州大靜縣下募瑟里戶籍中草』, 『濟州大靜縣日果里統籍』

2. 논저 및 논문

-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김봉옥 편역, 『續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94.
- 김봉현, 『濟州島歷史誌』, 경인문화사, 2005.
- 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 _____,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 김인호,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 우용출판사, 1997.
- 박용후 역, 『남명소승』, 제주문화, 1989.
- 서귀포문화원, 『법환 즈너마을 역사·문화 고증 및 기본계획』, 2004.
- 송성대, 『濟州人の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 아키미치 토모야 지음, 이선애 옮김, 『해양인류학』, 민속원, 2005.
- 이원조, 『耽羅誌草本』(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이원진 씬·김찬홍의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형상, 『耽羅巡歷圖·南宦博物』(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제주도교육연구원,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와 기념』, 200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國譯 瓶窩集』 III, 1990.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6 제주도, 아세아문화사, 1983.
- 고창석, 『자료소개』 濟州巡撫御使 朴天衡의 書啓, 『제주도사연구』 제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 _____,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態-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동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 다카하시 기미야기(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 _____,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탐라순력도 연구회, 2000.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6.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와 特徵』, 『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4.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전형택,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6.친인』, 『한국사』 2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_____, 『조선후기의 사회-5.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한국사』 34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 제3집, 제주도사연구회, 1994.
-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6.
-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The Social Status of ‘Pojaks’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from ‘Hojeok(Census Register data)’

Kim, Na-You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d on the existence of ‘abalone collecting men’ or ‘pojak’ who have used the ocean for their living through all which the social situations then on Jeju island could be sought. The summary of what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author searched the names of ‘pojakin’ or the abalone collectors in the old literatures including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reviewed them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their names which had been called variously such as ‘pojakin’, ‘pojagan’, ‘pojakhan’, bokjakgan’, or ‘pojakbae.’ Jeju ‘pojakin’ could be defined as male fishers who gathered fish and seafood in the sea and exchanged and sold them in the villages around the coastal area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 They also were the men who had chosen to present to the king marine products.

Second, the researcher focused their leaving of the island and their existence. Here are the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that they were forced to go to the mainland: troubles in their livelihood caused by the poor geographical nature, the increasing amount of tribute for the Joseon Dynasty, and the excessive demand from corrupt officials and local nobilities.

Third, the author studied the developments after their leaving for the mainland. The abalone collecting men were staying on the coastal areas mainly in Jeolla and Gyeonasang Province gathering seafood. And they obtained oceanic information in

person including ship building know-how, navigation, and art of ocean war, which were urgently needed for Joseon government who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nvasion from Japanese pirat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located them in the naval forces aiming to use their military abilities. On the other hand, other collectors who didn't follow or did avoid the government's structure, would wand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collusion with the pirates including Japanese pirate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the abalone gathering men had decreased and finally the existence and name had disappeared. Fourth, the author supposed and discussed the cause of their disappearing.

Fifth, their status and the detailed changes of Jikyek in Joseon Dynasty are studied based on the review of their family lines, who were one included in the social class forced to have six obliged labors on 'Hojeokjungcho(then the census registration)'. From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family lines, it is disclosed that most of them were from public slaves and they had marriages in the same social class or inter-slave families. In the late of 18th century, the status as 'Pojak' had been decreasingly phased out and four out of six 'Pojaks' had changed to public soldiers from the previous vocation. After the revolution of slave liberalization in 1801, most 'Pojaks' attempted to find their way out the hierarchical shackles.

[Key Words]

Pojaks, Hojukjungcho, abalone, seafood, Jinsang, The ban leaving the mainland, Six obliged labors, Public slaves

논문투고일 : 2009년 2월 10일 / 논문수정일 : 2009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20일

КСІ